

## ◆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 [2012년도, 제18대]

### 1. 목 적

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의 대상, 범위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,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여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2. 지원경비 분류 및 배분액

가.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은 기본지원경비, 추가지원경비, 인센티브경비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원

- 기본지원 :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배정한 총 예산을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배분함.
- 추가지원 : 추가지원경비는 기본지원을 전부 소진한 국회의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함. 단,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재분배할 수 있음.
- 인센티브 : 균등 인센티브와 특별 인센티브 운용은 『입법및정책개발 지원위원회』 결정에 따름.

나. 기본지원경비, 추가지원경비 및 인센티브경비의 배분액은 [표1]과 같음.

[표1] 제18대 기본지원·추가지원·인센티브 배분액(배분의원 299인 기준,  
2012년)

[단위 : 천원, ( )은 의원1인당 평균 배분액]

구 분	기본지원	추가지원	인센티브	합 계
일반수용비 (210-01)	1,443,000 (4,826)	1,135,500 (3,797)	-	2,367,000 (7,916)
사업추진비 (240-01)	441,000 (1,475)		-	652,500 (2,182)
특수활동비 (230-00)	-	-	747,500 (2,500)	747,500 (2,500)
합 계	1,884,000 (6,301)	1,135,500 (3,797)	747,500 (2,500)	3,767,000 (12,598)

### 3. 지원대상 및 범위

#### 가. 지원대상

-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으로 함.
-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, 「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조 (대통령실장)·제5조 (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)의 직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, 그 기간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. 다만, 겸직이 종료된 경우, 그 종료일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원예산을 배정
- 사직·퇴임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교체된 경우, 승계 또는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지원예산은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월할 계산하여 배정

## 나. 지원범위

### ■ 일반수용비(210-01)

-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(이하 “세미나 등”이라 한다)등과 관련된 자료발간비, 초청장인쇄비, 자료 발송료, 현수막·포스터, 광고료(동 경비의 총액은 의원 1인당 배정액의 10%를 초과하지 못함), 전문가사례금(30만원 이하), 물품구입비(자산취득성 물품구입은 제외), 주차료, 통행료, 물품운송료 등
-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장소사용료
-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, 조사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(의원 공동으로 500만원을 초과한 연구용역은 불가하며, 국회소속직원은 용역수탁대상에서 제외함)실시.

### ■ 특수활동비(230-00)

-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,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
### ■ 사업추진비(240-01)

- 세미나 등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접대비, 연회비 등
-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부수되는 국내교통비·숙박비

#### 4. 집행기준

가.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별로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후, 국회사무처 재무관(운영지원과장)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원

※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 및 소규모 용역의 경우에는 증빙 서류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.

※ 단, 소규모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수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함.

나. 국회의원 공동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,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최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.

다. 의원별로 배분된 비목별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업추진비(240-01)를 일반수용비(210-01)로 전환하여 사용가능(다만, 이 경우 사전에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함)

#### 5. 부칙

○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.

○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에 대한 종전의 지침은 폐지한다.

## ◇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 [2012년도, 제19대]

### 1. 목 적

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의 대상, 범위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,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여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2. 지원경비 분류 및 배분액

가.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은 기본지원경비, 추가지원경비, 인센티브 경비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원

- 기본지원 :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배정한 총 예산을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배분함.
- 추가지원 : 추가지원경비는 기본지원을 전부 소진한 국회의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함. 단,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재분배할 수 있음.
- 인센티브 : 균등 인센티브와 특별 인센티브 운용은 『입법및정책개발 지원위원회』 결정에 따름.

나. 기본지원경비, 추가지원경비 및 인센티브경비의 배분액은 [표1]과 같음.

[표1] 제19대 기본지원·추가지원·인센티브 배분액  
(배분의원 300인 기준, 2012년)

[단위 : 천원, ( )은 의원1인당 평균 배분액]

구 분	기본지원	추가지원	인센티브	합 계
일반수용비 (210-01)	2,533,500 (8,445)	1,919,450 (6,398)		4,053,430
사업추진비 (240-01)	665,700 (2,219)			1,065,220
특수활동비 (230-00)			1,265,000	1,265,000
합 계	3,199,200 (10,664)	1,919,450 (6,398)	1,265,000	6,383,650

### 3. 지원대상 및 범위

#### 가. 지원대상

-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으로 함.
-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, 「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조 (대통령실장)·제5조 (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)의 직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, 그 기간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. 다만, 겸직이 종료된 경우, 그 종료일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원예산을 배정
- 사직·퇴임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교체된 경우, 승계 또는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지원예산은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월할 계산하여 배정

## 나. 지원범위

### ■ 일반수용비(210-01)

-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(이하 “세미나 등”이라 한다)등과 관련된 자료발간비, 초청장인쇄비, 자료 발송료, 현수막·포스터, 광고료(광고료의 총액은 의원 1인당 배정액의 10%를 초과하지 못함), 전문가사례금(30만원 이하), 물품구입비(자산취득성 물품구입은 제외), 주차료, 통행료, 물품운송료 등
-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장소사용료
-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, 조사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(의원 공동으로 500만원을 초과한 연구용역은 불가하며, 국회소속직원은 용역수탁대상에서 제외함) 실시

### ■ 특수활동비(230-00)

-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,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
### ■ 사업추진비(240-01)

- 세미나 등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접대비, 연회비 등
-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부수되는 국내교통비·숙박비

#### 4. 집행기준

가.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별로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후, 국회사무처 재무관(운영지원과장)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원

※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 및 소규모 용역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.

※ 단, 소규모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수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함.

나. 국회의원 공동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,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최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.

다. 의원별로 배분된 비목별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업추진비(240-01)를 일반수용비(210-01)로 전환하여 사용가능

(다만, 이 경우 사전에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함.)

※ 단, 일반수용비를 사업추진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

(근거규정 : 국가재정법 45조, 국가재정법시행령 18조,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)

#### 5. 부칙

○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.

○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에 대한 종전의 지침은 폐지한다.



## ◇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 [2013년도]

### 1. 목 적

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의 대상, 범위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,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여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2. 지원경비 분류 및 배분액

가.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은 기본지원경비, 추가지원경비, 인센티브 경비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원

- 기본지원 :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배정한 총 예산을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배분함.
- 추가지원 : 추가지원경비는 기본지원을 전부 소진한 국회의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함. 단,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재분배할 수 있음.
- 인센티브 : 균등 인센티브와 특별 인센티브 운용은 『입법및정책개발 지원위원회』 결정에 따름.

나. 기본지원경비, 추가지원경비 및 인센티브경비의 배분액은 [표1]과 같음.

[표1] 기본지원·추가지원·인센티브 배분액  
(배분의원 300인 기준, 2013년)

[단위 : 천원, ( )은 의원1인당 평균 배분액]

구 분	기본지원	추가지원	인센티브	합 계
일반수용비 (210-01)	3,946,000 (13,154)	2,391,000 (7,970)		6,130,000
사업추진비 (240-01)	374,000 (1,246)			581,000
특수활동비 (230-00)			1,926,000	1,926,000
합 계	4,320,000 (14,400)	2,391,000 (7,970)	1,926,000	8,637,000

### 3. 지원대상 및 범위

#### 가. 지원대상

-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으로 함.
-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, 「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조 (대통령실장)·제5조 (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)의 직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, 그 기간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. 다만, 겸직이 종료된 경우, 그 종료일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원예산을 배정
- 사직·퇴임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교체된 경우, 승계 또는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지원예산은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월할 계산하여 배정

## 나. 지원범위

### ■ 일반수용비(210-01)

-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(이하 “세미나 등”이라 한다)등과 관련된 자료발간비, 초청장인쇄비, 자료발송료, 현수막·포스터, 광고료(광고료의 총액은 의원 1인당 배정액의 10%를 초과하지 못함), 전문가사례금(30만원 이하), 물품구입비(자산취득성 물품구입은 제외), 주차료, 통행료, 물품운송료 등
-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장소사용료
-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, 조사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(의원 공동으로 500만원을 초과한 연구용역은 불가하며, 국회소속직원은 용역수탁대상에서 제외함) 실시

### ■ 특수활동비(230-00)

-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,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
### ■ 사업추진비(240-01)

- 세미나 등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접대비, 연회비 등
-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부수되는 국내교통비·숙박비

#### 4. 집행기준

가.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별로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후, 국회사무처 재무관(운영지원과장)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원

※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 및 소규모 용역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.

※ 단, 소규모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수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함.

나. 국회의원 공동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,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최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.

다. 의원별로 배분된 비목별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업추진비(240-01)를 일반수용비(210-01)로 전환하여 사용가능

(다만, 이 경우 사전에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함.)

※ 단, 일반수용비를 사업추진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

(근거규정: 국가재정법 제5조,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8조,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)

#### 5. 부칙

○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.

○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에 대한 종전의 지침은 폐지한다.

## ◆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 [2014년도]

### 1. 목 적

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의 대상, 범위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,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여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2. 지원경비 분류 및 배분액

가.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은 기본지원경비, 추가지원경비, 인센티브 경비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원

- 기본지원 : 『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』가 배정한 총 예산을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배분함.
- 추가지원 : 추가지원경비는 기본지원을 전부 소진한 국회의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함. 단,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재분배할 수 있음.
- 인센티브 : 인센티브 운용은 『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』 결정에 따름.

나. 기본지원경비, 추가지원경비 및 인센티브경비의 배분액은 [표1]과 같음.

[표1] 기본지원·추가지원·인센티브 배분액  
(배분의원 300인 기준, 2014년)

[단위 : 천원, ( )은 의원1인당 평균 배분액]

구 분	기본지원	추가지원	인센티브	합 계
일반수용비 (210-01)	4,046,000 (13,487)	2,391,000 (7,970)	-	6,230,000
사업추진비 (240-01)	274,000 (913)		-	481,000
특수활동비 (230-00)	-	-	1,926,000	1,926,000
합 계	4,320,000 (14,400)	2,391,000 (7,970)	1,926,000	8,637,000

### 3. 지원대상 및 범위

#### 가. 지원대상

-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으로 함.
-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, 「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조(대통령실장)·제5조(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)의 직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, 그 기간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. 단, 겸직이 종료된 경우, 그 종료일부 터 월할 계산하여 지원예산을 배정
- 사직·퇴임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교체된 경우, 승계 또는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지원예산은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월할 계산하여 배정

## 나. 지원범위

### ■ 일반수용비(210-01)

-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(이하 “세미나 등”이라 한다) 등과 관련된 자료발간비, 초청장인쇄비, 자료발송료, 현수막·포스터, 광고료(광고료의 총액은 의원 1인당 배정액의 10%를 초과하지 못함), 전문가사례금(30만원 이하), 물품구입비(자산취득성 물품구입은 제외), 주차료, 통행료, 물품운송료 등
-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장소사용료
-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, 조사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(의원 공동으로 500만원을 초과한 연구용역은 불가하며, 국회소속직원은 용역수탁대상에서 제외함)실시

### ■ 특수활동비(230-00)

-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,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
### ■ 사업추진비(240-01)

- 세미나 등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접대비, 연회비 등
-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부수되는 국내교통비·숙박비

#### 4. 집행기준

가.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별로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후, 국회사무처 재무관(운영지원과장)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원

※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 및 소규모 용역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.

※ 단, 소규모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수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함.

나. 특수활동비는 입법 및 정책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 후 정산서류 제출, 불용금액 발생시 반납.

※ 단, 특수활동비 집행방안이 “1안” 또는 “2안”으로 결정시, 집행기준 “나”항 삭제함.

다. 국회의원 공동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,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최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.

라. 의원별로 배분된 비목별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업추진비(240-01)를 일반수용비(210-01)로 전환하여 사용가능, 이 경우 사전에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함.

※ 단, 일반수용비를 사업추진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

(근거규정 : 국가재정법 제45조,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8조,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)

#### 5. 부칙

○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.

○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에 대한 종전의 지침은 폐지한다.



## ◇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 [2015년도]

### 1. 목 적

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의 대상, 범위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,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여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2. 지원경비 분류 및 배분액

가.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은 기본지원경비, 추가지원경비, 인센티브 경비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원

- 기본지원 :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배정한 총 예산을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배분함.
- 추가지원 : 추가지원경비는 기본지원을 전부 소진한 국회의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함. 단,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재분배할 수 있음.
- 인센티브 : 균등인센티브는 의원 1인당 매원 48만원(총 576만원)을 집행하고 특별인센티브의 운용은 『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』 결정에 따름.

나. 기본지원경비, 추가지원경비 및 인센티브경비의 배분액은 [표1]과 같음.

[표1] 기본지원·추가지원·인센티브 배분액  
(배분의원 300인 기준, 2015년)

[단위 : 천원, ( )은 의원1인당 평균 배분액]

구 분	기본지원	추가지원	인센티브	합 계
일반수용비 (210-01)	4,046,000 (13,540)	2,392,000 (7,970)	-	6,245,430
사업추진비 (240-01)	274,000 (860)		-	466,570
특수활동비 (230-00)	-	-	1,924,793	1,924,793
합 계	4,320,000 (14,400)	2,392,000 (7,970)	1,926,000	8,636,793

### 3. 지원대상 및 범위

#### 가. 지원대상

-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으로 함.
-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, 그 기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. 다만, 겸직이 종료된 경우, 그 종료일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원예산을 배정
- 사직·퇴임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교체된 경우, 승계 또는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지원예산은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월할 계산하여 배정

## 나. 지원범위

### ■ 일반수용비(210-01)

-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(이하 “세미나 등”이라 한다)등과 관련된 자료발간비, 초청장인쇄비, 자료발송료, 현수막·포스터, 광고료(광고료의 총액은 의원 1인당 배정액의 10%를 초과하지 못함), 전문가사례금(30만원 이하), 물품구입비(자산취득성 물품구입은 제외), 주차료, 통행료, 물품운송료 등
-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장소사용료
-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, 조사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(의원 공동으로 500만원을 초과한 연구용역은 불가하며, 국회소속직원은 용역수탁대상에서 제외함) 실시

### ■ 특수활동비(230-00)

-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,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
### ■ 사업추진비(240-01)

- 세미나 등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접대비, 연회비 등
-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부수되는 국내교통비·숙박비

#### 4. 집행기준

가.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별로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후, 국회사무처 재무관(운영지원과장)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원

※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 및 소규모 용역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.

※ 단, 소규모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수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함.

나. 국회의원 공동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,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최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.

다. 의원별로 배분된 비목별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업추진비(240-01)를 일반수용비(210-01)로 전환하여 사용가능

(다만, 이 경우 사전에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함.)

※ 단, 일반수용비를 사업추진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

(근거규정: 국가재정법 제5조,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8조,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)

#### 5. 부칙

○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.

○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에 대한 종전의 지침은 폐지한다.

## ◇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 [2016년도, 제19대]

### 1. 목 적

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의 대상, 범위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,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여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2. 지원경비 분류 및 배분액

가.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은 기본지원경비, 인센티브경비, 부대경비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원

- 기본지원 :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배정한 총 예산을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배분함.
- 인센티브 : 균등인센티브는 의원 1인당 매월 48만원을 집행하고 특별인센티브의 운용은 『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』 결정에 따름.
- 부대경비 : 기본지원경비의 예상불용액 범위내에서 우수의원 시상식 및 법안평가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집행할 수 있음.

나. 기본지원경비, 추가지원경비 및 인센티브경비의 배분액은 [표1]과 같음.

[표1] 기본지원·인센티브 배분액  
(배분의원 300인 기준, 2016년)

[ ( )는 의원 1인당 평균배분액 ]

구 분	기본지원	인센티브	합계
일반수용비 (210-01)	25억 5,900만원 (8,530,000원)	-	26억 5,900만원
사업추진비 (240-01)	1억 9,110만원 (637,000원)	-	1억 9,110만원
특수활동비 (230-00)	-	5억 9,660만원	5억 9,660만원
특정업무경비 (250-03)	-	2억 2,210만원	2억 2,210만원
계	27억 5,010만원 (9,167,000원)	8억 4,840만원	35억 6,880만원

### 3. 지원대상 및 범위

#### 가. 지원대상

-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으로 함.
-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, 그 기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. 다만, 겸직이 종료된 경우, 그 종료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산을 배정
- 임기만료·퇴임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교체된 경우, 선거로 당선 되거나 승계된 국회의원의 지원예산은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배정

## 나. 지원범위

### ■ 일반수용비(210-01)

-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(이하 “세미나 등”이라 한다)등과 관련된 자료발간비, 초청장인쇄비, 자료발송료, 현수막·포스터, 광고료(광고료의 총액은 의원 1인당 배정액의 10%를 초과하지 못함), 전문가사례금(30만원 이하), 물품구입비(자산취득성 물품구입은 제외), 주차료, 통행료, 물품운송료 등
-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장소사용료
-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, 조사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(의원 공동으로 500만원을 초과한 연구용역은 불가하며, 국회소속직원은 용역수탁대상에서 제외함) 실시

### ■ 특수활동비(230-00) 및 특정업무경비(250-03)

-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,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
### ■ 사업추진비(240-01)

- 세미나 등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접대비, 연회비 등
-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부수되는 국내교통비·숙박비

#### 4. 집행기준

가.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별로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후, 국회사무처 재무관(운영지원과장)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원

※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 및 소규모 용역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.

※ 단, 소규모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수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함.

나. 국회의원 공동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,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최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.

다. 의원별로 배분된 비목별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업추진비(240-01)를 일반수용비(210-01)로 전환하여 사용가능

(다만, 이 경우 사전에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함.)

※ 단, 일반수용비를 사업추진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

(근거규정: 국가재정법 제45조,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8조,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)

#### 5. 부칙

○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.

○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에 대한 종전의 지침은 폐지한다.



## ◇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 [2016년도, 제20대]

### 1. 목 적

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의 대상, 범위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,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여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2. 지원경비 분류 및 배분액

가.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은 기본지원경비, 인센티브경비, 부대경비  
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원

- 기본지원 :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배정한 총 예산을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배분함.
- 인센티브 : 균등인센티브는 의원 1인당 매월 48만원을 집행하고 특별인센티브의 운용은 『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』 결정에 따름.
- 부대경비 : 기본지원경비의 예상불용액 범위내에서 우수의원 시상식 및 법안평가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집행할 수 있음.

나. 기본지원경비, 추가지원경비 및 인센티브경비의 배분액은 [표1]과 같음.

[표1] 기본지원·인센티브 배분액  
(배분의원 300인 기준, 2016년)

[ ( )는 의원 1인당 평균배분액 ]

구 분	기본지원	인센티브	합계
일반수용비 (210-01)	36억 8,663만원 (12,288,790원)	-	36억 8,663만원
사업추진비 (240-01)	2억 7,547만원 (918,230원)	-	2억 7,547만원
특수활동비 (230-00)	-	7억 7,619만원	7억 7,619만원
특정업무경비 (250-03)	-	3억 1,790만원	3억 1,790만원
계	39억 6,210만원 (13,207,020원)	10억 9,409만원	50억 5,620만원

### 3. 지원대상 및 범위

#### 가. 지원대상

-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으로 함.
-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, 그 기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. 다만, 겸직이 종료된 경우, 그 종료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산을 배정
- 임기만료·퇴임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교체된 경우, 선거로 당선 되거나 승계된 국회의원의 지원예산은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배정

## 나. 지원범위

### ■ 일반수용비(210-01)

-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(이하 “세미나 등”이라 한다)등과 관련된 자료발간비, 초청장인쇄비, 자료발송료, 현수막·포스터, 광고료(광고료의 총액은 의원 1인당 배정액의 10%를 초과하지 못함), 전문가사례금(30만원 이하), 물품구입비(자산취득성 물품구입은 제외), 주차료, 통행료, 물품운송료 등
-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장소사용료
-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, 조사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(의원 공동으로 500만원을 초과한 연구용역은 불가하며, 국회소속직원은 용역수탁대상에서 제외함) 실시

### ■ 특수활동비(230-00) 및 특정업무경비(250-03)

-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,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
### ■ 사업추진비(240-01)

- 세미나 등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접대비, 연회비 등
-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부수되는 국내교통비·숙박비

#### 4. 집행기준

가. 인센티브 경비를 제외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별로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후, 국회사무처 재무관(운영지원과장)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원

※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 및 소규모 용역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.

※ 단, 소규모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수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함.

나. 국회의원 공동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,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최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.

다. 의원별로 배분된 비목별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업추진비(240-01)를 일반수용비(210-01)로 전환하여 사용가능

(다만, 이 경우 사전에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함.)

※ 단, 일반수용비를 사업추진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

(근거규정 : 국가재정법 제45조,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8조,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)

#### 5. 부칙

○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.

○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에 대한 종전의 지침은 폐지한다.

## ◆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 [2017년도]

### 1. 목 적

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의 대상, 범위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,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여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2. 지원경비 분류 및 배분액

가.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은 기본지원경비, 추가지원경비, 인센티브 경비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원

- 기본지원 :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배정한 총 예산을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배분함.
- 추가지원 : 추가지원경비는 기본지원을 전부 소진한 국회의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함. 단,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재분배할 수 있음.
- 인센티브 : 균등 인센티브와 특별 인센티브 운용은 『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』 결정에 따름.
- 부대경비 : 기본지원경비의 예상불용액 범위 내에서 우수의원 시상식 및 법안평가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집행할 수 있음.

나. 기본지원경비, 추가지원경비 및 인센티브경비의 배분액은 [표]와 같음.

[표] 기본지원·추가지원·인센티브 배분액  
(배분의원 300인 기준, 2017년)

[단위 : 천원, ( )은 의원1인당 평균 배분액]

구 분	기본지원	추가지원 (10/31까지 신청)	인센티브	합 계
일반수용비 (210-01)	2,565,000 (8,550)	2,370,044 (7,900)	-	4,768,965
사업추진비 (240-01)	255,000 (850)		-	421,079
정책연구비 (260-02)	1,500,000 (5,000)		-	1,500,000
특수활동비 (230-00)	-	-	1,384,793	1,384,793
특정업무경비 (250-03)	-	-	540,000	540,000
합 계	4,320,000 (14,400)	2,370,044 (7,900)	1,924,793	8,614,837

### 3. 지원대상 및 범위

#### 가. 지원대상

-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으로 함.
-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, 그 기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. 다만, 겸직이 종료된 경우, 그 종료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산을 배정
- 임기만료·퇴임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교체된 경우, 승계 또는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지원예산은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배정

## 나. 지원범위

### ■ 일반수용비(210-01)

-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(이하 “세미나 등”이라 한다)등과 관련된 자료발간비, 초청장인쇄비, 자료발송료, 현수막·포스터, 광고료(광고료의 총액은 의원 1인당 배정액의 10%를 초과하지 못함), 전문가사례금(30만원 이하), 물품구입비(자산취득성 물품구입은 제외), 주차료, 통행료, 물품운송료 등
-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장소사용료

### ■ 사업추진비(240-01)

- 세미나 등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접대비, 연회비 등
-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부수되는 국내교통비·숙박비

### ■ 정책연구비(260-02)

-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, 조사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(국회소속직원은 용역수탁대상에서 제외함)실시

### ■ 특수활동비(230-00) 및 특정업무경비(250-03)

-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,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
#### 4. 집행기준

가. 인센티브 경비를 제외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별로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후, 국회사무처 재무관(운영지원과장)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원

※ 세미나, 공청회, 간담회, 토론회 및 소규모 용역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.

※ 단, 소규모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수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함.

나. 국회의원 공동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,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최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.

다. 의원별로 배분된 비목별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업추진비(240-01)를 일반수용비(210-01)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하며, 일반수용비(210-01)와 정책연구비(260-02)는 상호 전환 가능.

(다만, 이 경우 사전에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함.)

※ 단, 일반수용비와 정책연구비를 사업추진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

(근거규정 : 국가재정법 제45조,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8조,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)

#### 5. 부칙

○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.

○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에 대한 종전의 지침은 폐지한다.